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7월 20일 05시 45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	3

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

2014.04.17 조회수 1207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9
담당부서	수도행정과
상위법령	수도법 제38조
규칙	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12조
유형	2호 - 명령(시정 등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0-12-22
규제시행/폐지일	2000-12-22
규제내용	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.

[목록](#)[이전글](#)[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8](#)[다음글](#)[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3](#)

Yeosu Web Contents

